



[ 2019. 3. 14.] [ 29621 , 2019. 3. 12., ]

( ) 043-719-3402

1 ( ) 「 」 . < 2012.

2. 3.>

2 ( ) 「 」 ( " " ) 2 2 1

1. :

가.

(1 )

2. :

가.

( 3 1 . )가

( 「 」 2 1

) (授與)

3. :

가.

가

(小分)

[ 2019. 3. 12.]

[ : 2020. 3. 14] 2 3

3 <2012. 2. 3.>

4 <2012. 2. 3.>

5 <2012. 2. 3.>

6 <2012. 2. 3.>

7 <2012. 2. 3.>

8 <2012. 2. 3.>

9 <2012. 2. 3.>

10 <2012. 2. 3.>

11 ( ) 28 2

1

5

. < 2008. 2. 29., 2010. 3. 15., 2012. 2. 3., 2013. 3. 23., 2019. 3. 12.>

12 ( ) 28

. < 2012. 2. 3., 2013. 3. 23.>  
. < 2008. 2. 29., 2010. 3. 15., 2013. 3. 23.>

12 2( ) 28 4 가

15  
10 . < 2012. 2. 3., 2013. 3. 23., 2019. 3. 12.>

1 가  
. , 28 4  
. < 2014. 11. 4., 2019. 3. 12.>

2

, < 2012. 2. 3., 2014. 11. 4.>

[ 2007. 7. 3.]

13 ( ) 28 2 1 "

- 1.
- 2.
- 3.
- 4.

28 2 1

[ 2015. 7. 24.]

14 ( ) 34 1

. < 2012. 2. 3., 2013. 3. 23., 2014. 11. 4., 2015. 7. 24., 2017. 1. 31., 2019. 3. 12.>

- 1. 3
- 1 2. 3 2 1
- 1 3. 5 6 , ( " "
- )
- 1 4. 5 2 2 3
- 2. 6 1 ,
- 3. 18 . . .
- 3 2. 18 2 .
- 3 3. 19
- 가. 3 1
- . 3 2 1
- . 5 6
- . 6 1
- 4. 20
- 5. 22
- 6. 23 . ,
- 6 2. 23 2
- 7. 24 , , . ,

- 8. 27
- 9. 28
- 9 2. 28 2
- 10. 31
- 11. 40 1
- [ 2007. 7. 3.]
- [ :2020. 3. 14.] 14 1 3, 14 2 , 14 3 3, 14 7 , 14 10 , 14 11

15 ( ) ( 14 가 「 」 23 , 18 2 , 19 1 4 가 . < 2012. 2. 3., 2013. 3. 23., 2015. 7. 24., 2019. 3. 12.>

- 1. 3
- 2. 4
- 3. 6
- 4. 18
- 4 2. 19
- 5. 20
- 6. 22
- 7. 23
- 8. 24

- 9. 27
- 10. 28
- 11. 31
- [ 2012. 1. 6.]
- [ :2020. 3. 14.] 15 8

15 ( ) ( 14 가 「 」 23 , 18 2 , 19 1 4 가 . < 2012. 2. 3., 2013. 3. 23., 2015. 7. 24., 2019. 3. 12.>

- 1. 3
- 1 2. 3 2 1
- 2. 4
- 3. 6
- 4. 18
- 4 2. 19
- 5. 20
- 6. 22

7. 23

8. 24

9. 27

10. 28

11. 31

[ 2012. 1. 6.]

[ : 2020. 3. 14.] 15 8

16 ( ) 40 1 2 . < 2019. 3. 12.>

[ 2012. 2. 3.]

[ 13 <2012. 2. 3.>]

< 29621 ,2019. 3. 12.>

2019 3 14 . , 2 3 , 14 1 2 15 1 2

14 1 3 • 2 • 3 3 • 7 • 10 • 11 , 15 8 , 1 2

2020 3 14 .

■ 화장품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19. 3. 12.> [시행일 : 2020. 3. 14.]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
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관련된 부분  
과징금 산정기준(제1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화장품의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1)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같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모든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- 2)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같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- 3) 1) 및 2)의 경우 영업자가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 및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다.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4조제4항의 위반에 따른 해당 품목 판매업무 또는 광고업무의 정지처분을 같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,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2분의 1의 금액에 처분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.

2.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산정기준

(단위: 천원)

전년도 총생산액 및 총수입액	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
20,000 미만	30
20,000 이상 - 50,000 미만	60
50,000 이상 - 70,000 미만	90
70,000 이상 - 100,000 미만	120
100,000 이상 - 150,000 미만	150
150,000 이상 - 200,000 미만	190
200,000 이상 - 300,000 미만	230
300,000 이상 - 500,000 미만	270
500,000 이상 - 700,000 미만	310

700,000 이상 - 1,000,000 미만	350
1,000,000 이상 - 2,000,000 미만	400
2,000,000 이상 - 3,000,000 미만	450
3,000,000 이상 - 5,000,000 미만	500
5,000,000 이상 - 7,000,000 미만	550
7,000,000 이상 - 10,000,000 미만	600
10,000,000 이상 - 20,000,000 미만	660
20,000,000 이상 - 30,000,000 미만	720
30,000,000 이상 - 40,000,000 미만	780
40,000,000 이상	840

■ 화장품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19. 3. 12.> [시행일 : 2020. 3. 14.]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관련된 부분

**과태료의 부과기준** (제1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.
- 나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횟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원)
가. 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2호	100
나.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3호	50
다.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4호	50
라.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5호	50
마.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(위탁제조를 포함한다) 또는 수입한化妆품을 유통·판매한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7호	100
바. 법 제1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0조 제1항제6호	100